2016년도 제2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12월 2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헌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의안 제46호 -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주관위원의 의견을 반영·수정한 보고서를 위원협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동 위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강화 차원에서 처음 공표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기준금리 운용시 동 일반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대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출제도의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 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記述)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일부 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기조적인 물가상승세 수준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나 물가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2%를 다 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음.

일부 위원들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접근,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안정 유의,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하 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립시 지난 1년전의 여건전망에 비추어 실제 통화신용정책 운영은 적정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지난 한 해동안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평가하자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정책파급 시차가 긴 통화신용정책을 그 해 말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와금통위에서 결정한 정책을 금통위가 평가하여 공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생략)